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I. 권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집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II. 구성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6.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의 할 수 있습니다.
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안건 및 그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